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I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 ① 입소정원은 23인을 정원으로 한다.
- ②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원의 5%인 1인으로 한다.
- ③ 입소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와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 받은 자
 2. 노인복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보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소를 요청한 자
 3.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시설장이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④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원활한 모집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홈페이지나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 관리를 통하여 수급자를 확보한다.
 2. 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경로당, 지역단체의 모임, 지역단위 경로행사, 대상자별 개별접촉 등을 통해 확보한다.
 3. 시설소식지 발간, 입소 안내 홍보물제작, 각종 언론매체나 생활정보지 등에 수급자 입소 안내 광고를 통하여 확보한다.

II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인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5조 (계약의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6조 (계약의 기간)

- ①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고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소 급여제공 계약기간은 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 ②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대표자(또는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월 이용비용 금액)

- ① 월 이용료는 각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고시에서 정한 수\가로 하며,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적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운영규정 뒷면에 [별표 4]로 첨부한다.
- ②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③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입소자의 경우 입소 보증금과 월 이용료와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노인복지사업안내” 「6. 시설입소자 지원 비용 및 지급절차」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월별 비용수납한도액의 30%범위 이내에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 입소대상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텐터 등 위생재료비 추가 수납이 가능하다.
-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식재료비에 대하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생계급여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은 비급여 비용으로 납부한다.
- ⑤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말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⑥ 이용료 납부는 덕소효드림요양원 수납 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권리)

-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 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 ③ 입소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입소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5.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은 물론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입소자는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어르신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외박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보증금과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III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료 및 비용의 변경)

-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후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바로 이용료 계산에 적용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수급자가 외출 또는 병원방문을 위해 시설 또는 의료기관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하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원거리에 위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세부기준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Ⅳ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 (급여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 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그리고 장기요양에 관한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급자 상담, 프로그램 진행, 요양급여 제공, 수급자에 대한 사정과 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 등 각종 급여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한다.
- ②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장기요양요원 등이 입소 수급자에 대하여 각종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 간호제공 기록지, 기타 급여제공과 관련된 기록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③ 시설에서 입소생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제공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세 부 내 용
신체 활동 지원	세면도움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식사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경관 영양 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 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보조,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기능 회복 훈련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맨손체조, 타월체조, 쉐라밴드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 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신체기능의 훈련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연하운동, 상지기능, 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 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제공
	일상생활 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 동작, 이동 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기능 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물리치료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 치료, 견인요법 등
	작업치료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간호 및 처치	관찰 및 측정 (혈압·체중 등)	협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흉위 측정
	투약 및 주사	경구약 투여 및 도움·확인, 외용제 도포 및 좌약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호흡기간호	흡인실시, 가슴기, 네브라이저 제공, 산소공급
	피부간호	외상처치, 붕대교환, 연고 바르기, 욕창간호, 약욕제공 등
	영양간호	중심정맥영양 준비 및 실시와 관찰
	통증간호	온·냉습포 제공
기타 서비스	응급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치매관리지원	배회·불결행위·폭력행위·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에 문제행동 대처
	의사소통도움	책 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 콜벨 대처
	언어치료	발성연습, 구음연습

④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의
료기관 이용 비용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발생한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V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제13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
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
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
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이나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
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또는 상급 침실로 이동하 여 편안한 환경 및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
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 ③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VI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제14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②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 및 협력병원 등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우리 시설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여 수급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 ④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자(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시설장)은 “연계기록지”를 교부해야 한다.

VII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제1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직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나 직원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 시설물의 손괴나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모든 직원은 시설의 각종 시설물의 사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⑤ 입소자는 덕소효드림요양원 내에서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 ⑥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이용자 및 덕소효드림요양원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덕소효드림요양원 내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VII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제16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덕소효드림요양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입소자 또는 보호자)은 “갑”(대표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③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가입) 대표자(또는 시설장)은 제16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2026년 장기요양 비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2024.10.31.)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요양시설 1일당 수가 및 세부내역

(2026.01.01.기준/ 2:1 / 30일 기준/원)

구 분	세부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시설급여	1일 수가	93,070	86,340	81,540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①	일반(20%)	558,420	518,040	489,240
	경감(12%)	335,052	310,824	293,544
	경감(8%)	223,368	207,216	195,696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식사비·간식비 (비급여) ②	월 405,000 *식사 : 1식 4,000 x 3식 x 30일 = 360,000 *간식 : 1식 1,500 x 30일 = 45,000 *경관식 월 200,000			
개인부담금 총액 ① + ②	일반(20%)	963,420	923,040	894,240
	경감(12%)	740,052	715,824	698,544
	경감(8%)	628,368	612,216	600,696
	기초수급자	식사비·간식비 차액		
기타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월 250,000		
	이미용비	1회 15,000		
	협약진료비	1회 1,500		
	일반입소비	1일 70,000(식사비·간식비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 식사비·간식비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생계급여 지원액을 초과하는 차액은 비급여 항목으로 청구됩니다. 또한 상급침실 이용료, 약제비 등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덕소효드림요양원장

